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
2023년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2023.3.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

「2023년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2023. 3.

**한 국 연 구 재 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차 례

1. 공통질의	1
2. 연구소(집단) 지원사업	4
3. 연구자(개인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9
3-1. 개인연구 공통	9
3-2.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12
3-3. 개인연구자지원사업	33
3-4. 명저번역지원사업	41
3-5. 저술출판지원사업	43
3-6. 공동연구지원사업	45
3-7. 융합연구지원사업	51
4. 인문학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	52

공통질의

1	<p>Q. 해당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발표자료는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p>
	<p>A. 'NRF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동영상 다시보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gJCoHv26tY</p> <p>또 설명회 자료집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192060&biz_no=82&target=&biz_not_gu_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p>
2	<p>Q. 1. 올해 공고는 언제 발표됩니까? 2. 신청 접수는 언제부터입니까? 3. 선정 발표는 언제쯤 발표되나요?</p>
	<p>A. 각 사업별 추진일정(신규과제 기준)은 설명회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설명회 자료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192060&biz_no=82&target=&biz_not_gu_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p>
3	<p>Q. 사업 전반에 걸쳐 관련 서식 등 전년도와 변경사항이 있나요? 서식 등 공지는 언제 되는지요?</p>
	<p>A. 각 사업별 추진일정(신규과제 기준)은 설명회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은 사업별 신청요강 등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4	<p>Q. 2023년 6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2024년 2월에 마무리한다고 들었는데, 기존엔 11~12개월 동안 진행되던 연구기간이 3개월 가량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p>
	<p>A.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5월, 7월, 9월로 분산되어 있던 신규과제 연구개시일을</p>

6월과 9월 개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회계일정 등을 고려해 1년차 연구기간을 6월 개시 신규과제는 9개월로, 9월 개시 신규과제는 6개월로 조정하는 한편 이로 인해 조정된 연구기간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에 보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참고 부탁드립니다.

5 Q. 지방대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방소재(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대학을 말하며, 본교와 분교가 구분되는 4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은 분교에 지방소재 대학을 적용합니다.

6 Q. 박사과정 및 수료생의 연구비 상한액은 올해에도 250만원으로 동일한가요?

A.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의 경우 월 250만원 이내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7 Q. 연구자 신청 기간과 동시 및 후에 진행되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또는 IRIS)에서 연구자가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면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입력한 정보를 확인 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구자 접수완료 이후 신청기간 내에는 주관연구기관의 반려를 받아 수정 가능합니다.

8 Q. 과제개시일이 바뀌면 기존의 계속과제들도 같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에 5월 1일자로 개시된 연구를 수행 중이라면 이번 연도는 4월 30일 종료가 아닌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다음 연도 시작을 6월 1일로 하는 것이지요?

A.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대학회계일정 등 고려한 연구기간 조정은 신규과제에 적용됩니다. 기존 계속과제의 연구개시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9 Q. 신청 시 사업별로 사용하는 시스템(e-R&D, IRIS)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후 모든 사업 신청은 결국 IRIS로 넘어가는 건지요?

A.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합·정비 하고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을 구축하였습니다.

인문사회연구본부의 경우 2024년 전사업 IRIS 전면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부 사업만 시범적용을 하게되어 e-R&D와 IRIS 시스템을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p>Q. 관련 사업을 올 해 신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연구자는 IRIS에 가입해야 하는지요?</p>
	<p>A. 인문사회연구본부의 경우 2024년 전 사업 IRIS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과제 접수의 수월성을 위해 사전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p>
11	<p>Q. IRIS 정보 이관 동의 후, IRIS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소속기관이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 2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p>
	<p>A. 소속 대학으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p>
12	<p>Q. 향후 KRI는 사용하지 않고, IRIS만 사용할 예정인가요? 동일한 정보를 KRI와 IRIS에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IRIS에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A. e-R&D 시스템은 KRI와 데이터 연계가 되어 있지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으로 KRI에서 NRI로의 데이터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KRI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 KRI에서 데이터정보 이관 동의 후 통합하실 수 있으며, 신규로 가입하시는 경우 IRIS 회원가입 후 NRI에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p>
13	<p>Q. 평가에 있어서 블라인드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데 선정평가의 기준으로 연구자의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요?</p>
	<p>A.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를 실시하는 사업은 연구요약문 및 제출되는 대표 업적 등을 통해 신청자의 연구 업적 우수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p>
14	<p>Q. 평가위원 리스트는 홈페이지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p>
	<p>A.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지 화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군별 평가위원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p>

연구소(집단연구) 지원사업

1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2022년도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선정률이 궁금합니다. 2023년도에도 지역할당제 적용하는지요?</p>
	<p>A. 2022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은 총 226개의 과제가 접수되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17과제를 선정하여 약 7.5%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역 대학 선정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선정도 신청과제수를 고려한 지방소재 기관 할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p>
2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미래공유형의 경우 작년(2022)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공고란에서 2개의 사업명을 확인할 수 없어서 관련 사항을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개의 사업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p>
	<p>A. 미래공유형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6개 세부유형 중 한 유형이며,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2개 과제를 선정 예정입니다.</p>
3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대학 부설연구소가 아닌, 비영리 법인의 연구소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A.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세부유형별로 지원대상이 상이하며, 2023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하는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의 경우 국내연구기관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p>
4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은 연구비 집행에 있어 2022년 3월 1일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학술진흥법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을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3년 2월 현재 연구비 집행 관련 내규는 학술진흥법을 참고하여 집행</p>

	<p>하면 될까요? 현재 집행에 대한 질의응답은 혁신법을 기반으로 안내된 것이 많은데 학술진흥법과 관련한 집행 기준은 정산팀에 문의하면 될까요?</p>
	<p>A. 기본적으로 협약 상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은 종합계획 내 붙임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3757</p>
<p>5</p>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대상인 국내연구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민간 연구소도 해당이 되는지요?</p>
	<p>A. 국내 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p>
<p>6</p>	<p>Q. 집단연구의 연구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임교원 N명 포함 전체 연구원 수 등</p>
	<p>A.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참여인력 구성은 연구책임자와 일반공동연구원 3명 이상, 전임연구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되는 신청요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p>
<p>7</p>	<p>Q. 현재 한중연에서 주관하고 있는 'K학술혁신연구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의 경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또는 인문한국 지원사업에 지원 또는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A. 재단에서 주관하는 집단연구준 사업인 인문사회연구소(중점 포함), HK/HK+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소지원사업, 토대연구 지원사업 내에서는 연구소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 외부기관 수행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8	<p>Q. 현재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공동연구원으로 사업에 참여 증인데 연구책임자로 올해 신규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요?</p>
<p>A.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은 동 사업 내에서 1인 1과제에 한해 신청 및 참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계속 참여하실 경우,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합니다.</p>	
9	<p>Q. 집단연구(대학중점연구)를 수행중이나, 8월 30일 종료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p>
<p>A.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p>	
10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소외보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p>
<p>A.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순수학문연구형 유형(논문/저역서)에 한해 신규선정 과제 예산의 10% 내외를 「소외」 및 「창의·도전」 분야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 동 사업 신청요강의 문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소외) 학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연구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 및 연구자 규모가 열악한 분야 등 (창의/도전) 기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영역을 초월하여, 해당분야 진흥을 위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문분야연구</p>	
11	<p>Q. 본교의 A연구원 산하에 B연구소가 있는데 동시에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에 순수학문연구형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A연구원이 논문저역서 유형에 B연구소가 번역유형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p>
<p>A. 각각의 연구원(소)은 동 사업 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연구원(소)에 소속된 참여인력은 다른 연구원(소) 소속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A연구원 및 B연구소는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로 자체 운영규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 신청 이전 재단 KCI에 등록된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 및 복합학 등 포함)의 대학부설연구소여야 합니다 (신청 시, A연구원과 B연구소의 정관 및 자체 운영규정 등을 각각 제출</p>	

12	<p>Q.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경우 모든 것들을 연구소에서 관리 (연구신청을 비롯하여 추후 연구비집행 등)하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관리기관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지요? 즉, 수행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 관리기관은 대학 부설산학협력단</p>
<p>A. 대학의 연구과제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과제관리가 이루어집니다.</p>	
13	<p>Q.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개인연구자인가요, 연구원 소속 연구자인가요?</p>
<p>A. 단독으로 개인연구에 선정되면 개인연구자이고, 소속된 연구소가 집단연구에 선정되면 집단연구의 공동연구원이 됩니다.</p>	
14	<p>Q. 설명회 내 증점 추진내용 1의 법령 정비 추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령 정비 전까지 사업 가이드라인의 정비와 정비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p>
<p>A.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의 경우 2023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3757</p>	
15	<p>Q.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은 17년도 1유형 '23년도 연구기간이 기존 12개월이었는데, 10개월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업연차별로 모든 참여인력(연구교수, 연구원, 행정연구원) 근로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절차상 이미 12개월을 기준으로 이미 신규 및 재임용이 마감된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난 연차보고서에 예산 집행 계획은 12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10개월로 다시 받으실 계획이신지,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 운영을 위해 미리 안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A. 연구기간 재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은 연차점검 결과 통보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p>	

16	<p>Q.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아젠다 연구 유형의 경우 지원대상이 반드시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하는 건가요? 지원대상에 박사후 연구자는 책임연구자가 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p>
	<p>A.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재단 사회과학단 RB분야 분류 기준. 단, RB분야중 여성학, 생활과학, 심리과학, 문헌정보학 등은 사회과학분야에 포함됨) 전임교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p>
17	<p>Q.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선정률은 어느 정도 였는지요? 수도권과 지역의 선정률, 비율은 어느 정도 였는지요?</p>
	<p>A. 2022년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은 총 121과제가 신청되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15과제를 선정하여 약 12.4%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비율이 비등하게 선정되었습니다.</p>
18	<p>Q.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박사후연구원(전임연구인력)과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선정 시에 2가지 모두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요?</p>
	<p>A.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내에서는 인건비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즉,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과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참여로 인건비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p>
19	<p>Q.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아젠다 연구 지원자격은 무조건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하는 건가요? 박사 후 연구자도 지원대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p>
	<p>A.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아젠다 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박사학위소지자는 동 사업의 전임연구인력으로 참여 가능합니다.</p>

연구자(개인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 개인연구 공통

1	<p>Q. 개인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2023년 2월 6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p>
2	<p>Q.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경우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개인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 지원대상이 '석사학위 이상' 이었던 개인지원사업에 지원했다가, 석박통합과정 수료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지원대상 조정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재하신 '석사학위 이상'이라는 지원대상에는 석박통합과정 수료자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A.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수료하더라도 신청 불가합니다.</p>
3	<p>Q.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서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어느 정도 수준을 표절로 보는지요? 2. 기 수행과제의 경우 이미 논문이 발간되어 있으면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A. 1. 재단에서 지난 10년 내외로 선정되었던 과제와 키워드 분석 시스템 및 Copykiller를 활용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중복이라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책임자로 부터 소명서를 받은 이후 전문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되어 있는 것은 인정됩니다.</p>
4	<p>Q.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서 2책 3공이 무슨 뜻일까요? A. 학술지원사업에 최대 3개까지, 이 중에서 연구책임자로는 2개까지 참여 또는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p>
5	<p>Q.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배포된 자료에</p>

	<p>따르면, 해외연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p> <p>A. 국내 국적자로 제한하는 사업은 학술연구교수 A, B유형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외국인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연구관리가 가능한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p>
6	<p>Q. 학술서와 교양서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p> <p>A. 학술서 : 학술·전문적인 내용의 도서 교양서 :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도서</p>
7	<p>Q. 개인·공동 연구지원에 있어 연구업적 부분의 '저서'는 반드시 전공기술만을 다루는 전문학술서만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p> <p>A. 저서의 인정 기준은 ISBN이 부여된 도서로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됩니다.</p>
8	<p>Q. 제안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위원 사전공개는 정녕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심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2책3공에 있어, 으로 묶고 있는데,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준으로 분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과확산준에 명저번역과 저술출판 사업 2만 있는 것도 양적 비대칭이고, 개인연구와 일반공동연구/융복합연구 등을 모두 하나의 준으로 묶는 것은 과제 지원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p>A. 1.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 선정 이후 각 사업준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p> <p>2. 현재 공동연구의 선정률이 10% 미만(2022년 7%)입니다. 때문에 개인연구사업과 분리 시 신청과제가 더욱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정률 자체가 2~3% 정도로 될 우려가 있어 개인사업과 동일분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p>

9	<p>Q. 연구책임자로는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명저번역지원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고 두 과제가 모두 선정되면 기존에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이 없다면 과제가 없다면 해당 모두 수행이 가능한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군에 있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p>
---	--

A.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은 3개 사업군(①개인/공동연구군, ②성과확산군, ③집단연구군)으로 나뉩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개인/공동연구군에 속하고 명저번역지원사업은 성과확산군에 속합니다. 현재 수행하고 계신 사업이 없으면 신진, 명저 동시에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 군 내에서는 1개 사업에만 연구책임자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진과 증견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유형과 공동연구지원사업은 연구책임자로는 동시 신청 및 수행할 수 없습니다.

10	<p>Q. 1년 과제와 다년과제 신청을 할 때 고민이 됩니다. 1년과제를 신청하고 이어지는 연구를 다시 1년 신청해서 해야 될지, 다년으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년, 다년의 평가 기준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

A. 단년으로 신청하실지 다년으로 신청하실지는 신청 연구자의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자 본인이 판단하시는게 적절하시며, 예를 들어 단년과 다년(예: 1~3년)을 신청할 수 있는 증견연구트랙3(증견연구일반)의 경우 평가지표에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배점5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1	<p>Q.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p>
<p>A.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증입니다. 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p>	
2	<p>Q.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 학생만 대상인가요?</p>
<p>A.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입니다.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를 지원합니다.</p>	
3	<p>Q.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별도 사업인가요?</p>
<p>A. 별도의 사업입니다.</p>	
4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B유형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p>
<p>A. A, B유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두개 모두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A유형만 지원됩니다.</p>	
5	<p>Q. 연구재단에서는 연구교수의 학점을 6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의 학점을 3학점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교수의 임금도 학교별로 다른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연구자의 연구환경이 잘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재단에서 좋은 환경의 연구환경을 설정하여도 현실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연구전임제가 대학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p>
<p>A.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은 사업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2학점으로 강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수의 안정적인 연구수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연구교수 '강의료 지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업 게시판, 신청요강 내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VII 기타사항- 1. 강의료 지급 가이드라인]</p>	
6	<p>Q. 2022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형 경쟁률과 최종 선정률</p>

	<p>은 몇 응였나요?</p> <p>A. 2022년 A유형의 선정률은 약 21% 내외입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신청과제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알 수 없습니다.</p>
7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2020년 수혜자입니다. 2025년이 되면 중복해서 같은 유형으로 중복 수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보고 싶습니다.</p> <p>A. A유형의 수혜자가 연구종료 후 A유형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p>
8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서 타 학교 출강 학점에 제한이 있나요?</p> <p>A.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선정자는 연간 12학점(계절학기 제외)을 초과하여 대학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강의 학점 제한 규정은 자교·타교 강의 및 대학원 강의를 모두 포함합니다.</p>
9	<p>Q. 2022년 9월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8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올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지원이 가능한가요?</p> <p>A.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별 신청요강 내 [Ⅲ. 신청-2. 신청 및 수행 제한]에서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p>
10	<p>Q.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수행 시 강사료 삭감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립대학에 지원예정입니다.</p> <p>A. 일부 대학에서 강의료 및 학점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단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공고를 통해서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의 강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p>
11	<p>Q.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관련 질문입니다.</p>

	<p>1. 최근 5년간의 연구 업적이 10편 이상입니다. 우수성을 모두 기술하기에는 페이지 제한이 있어서 내용의 요약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논문명의 작성이 금지되어 있는데 논문을 구분하기 위하여 넘버링을 임의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KRI 기준으로 넘버링을 해야 되는지요?</p> <p>2. 대표 연구 업적 개요에 발행연도와 학술지명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 두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신청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재해야 되는지요?</p>
--	---

- A. 1. 내용에 대한 요약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Ⅱ. 연구 역량 ~ Ⅲ-3.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분량은 15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방법의 경우 말씀하신 임의의 넘버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KRI기준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양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해당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2	<p>Q.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지난해 경우 박사 학위 졸업 7년 이내와 이후 지원이 따로 진행되었던데 올해는 다같이 지원하는 건가요?</p>
----	---

- A. A-1, A-2로 나누어지며, 기준은 박사 학위 졸업 7년 기준으로 구분되며, 올해도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13	<p>Q.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지원하는 조건에 무소속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지원에 영향이 있나요?</p>
----	---

- A.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지원 조건 중 "무소속" 조건은 없습니다. 소속기관 유무와 무관하게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기 관련한 연구자들에 한해 한국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체가 제한 요건은 아니나, 본 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취업자로 구분하여 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바, 해당 개인사업자 여부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	<p>Q. 3월부터 연구소 객원연구원(무급)이면 개인연구자 자격으로 학술연구교수 A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p>
	<p>A.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 퇴직하셔야 하며,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등에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p>
15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연구개시일이 6.1.이면 기존처럼 재직자의 경우 퇴직 유예 기간을 주시나요?</p>
	<p>A. 금년도 사업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선정일정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습니다.</p>
16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올해도 지방 쿼터제가 시행되나요?</p>
	<p>A. 예, 그렇습니다. 선정과제의 50%가 지방으로 배정됩니다.</p>
17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선정이 된 이후에 인건비가 잡히는 다른 연구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것이지요? 인건비만 잡지 않으면 참여는 가능한지요? 2. 기관보험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A. 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타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다면 타과제의 재원이 어느 재원인지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해당 소속기관에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p>
18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과제지원 시 관리기관을 지정하라고 하였는데 미지정 시 불이익 있는지요? (아직 지원 및 합격도 안했는데 관리기관에 컨택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p>
	<p>A. 과제 관리기관 미지정 시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으로 분류됩니다.</p>
19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경우 소속기관에 대하여 지방 할당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서울/수도권/지방 이렇게</p>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이렇게 틀로 나뉘어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선정과제는 400과제로 예정입니다. 그 중 50%를 지방 소재기관에서 신청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20 Q. 1.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신청할 때 소속 연구소가 있는 대학교와 23년도 1학기 포함 실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예: 신청 시 소속대학C, 23년 이후 3년간 강의를 배정받은 소속대학D 인 경우)
2. 현재 2019년 제정된 강사법에 맞춰 기본적으로 6학점 배정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선정되었을 경우, 6학점 배정 받는 것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3학점만 배정받아야 하나요?

A. 1. 예, 괜찮습니다.
2.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선정자가 대학 강의 시, 연간* 12학점(계절학기 제외**) 이내로 대학 강의를 하여야 합니다.
* “연간” 기준: 선정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
** 계절학기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강의하여야 함
※ 상기의 강의학점 제한규정은 자교·타교 강의 및 대학원 강의를 모두 포함함

21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구업적 3편 이상인가요? 아니면 박사학위 전의 연구 업적도 인정이 되나요?

A. 최근 5년(2018.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까지) 내를 기준으로 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22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사업비는 한 과제당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과제 내용에 따라 과제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A. A유형의 경우 5년간 지원되며, 연간 4천만 원입니다. 1백만 원은 간접비, 39백만 원은 인건비로 지원됩니다.

23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선정 시 기존에 다니고 있던

	<p>대학에서 근무 할 수 없는 건가요? 연구전담교수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전임은 아닙니다.</p>
	<p>A.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선정자 중, 기존에 취업자 신분이셨던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신 후 A유형 주관 기관인 대학 내 부설연구소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두 기관이 동일 기관인 경우, 별도의 퇴직처리 후 다시 채용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기관 내부 문서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남겨두시는 방법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우선 해당 대학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4</p>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신진연구지원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4월에 사업 종료가 됩니다. A유형에 선정되어 6월에 개시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p>
	<p>A.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제출 시 과제 신청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 연구 종료 이후 6개월이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과제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p>
<p>25</p>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선정된 경우 강의 제한이 6학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술연구교수의 실질적인 월 급여는 300만원 이내이고, 대학별 강의료는 차이가 많이 나고 방학 중에는 강의료도 없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일 경우, 생계유지가 녹록지 않습니다.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안 드립니다.</p>
	<p>A.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선정자는 연간 12학점(계절학기 제외)을 초과하여 대학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의료 단가 조정에 관하여는 재단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제한적입니다.</p>
<p>26</p>	<p>Q. 2023년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 연구소의 선정률은 50%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정률은 앞으로도 계속 50%로 유지할 계획인지 문의드립니다.</p>
	<p>A. 학술A의 지방 소속 과제에 대해서 50%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선정률이 50%는 아닙니다.</p>

27	<p>Q. A유형에 선정되면 한 대학 내에서 이증 발령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비전임 교원으로 재직 중이고 한 학기의 끝은 6/15일 이후인데요, 지금 재직중인 대학을 연구기관으로 넣었을 때 과제 선정이 될 경우 이번 6/1일부터 어떻게 연구소에 취직이 가능할까요?</p>
<p>A. A유형의 경우 선정 시 퇴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 기관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사업선정에 따른 신분변경이라고 별도의 내부문서를 남기고 증빙하시면 됩니다.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p>	
28	<p>Q.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선정된 대학 시간 강사는 최대 강의 시수가 6시간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년도 1학기 배정된 강의시수가 6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강사가 A유형에 선정되어 6월 1일자로 사업 개시가 될 경우 초과되는 시간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p>
<p>A.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강의학점 제한은 연간 12학점 이내로(자교와 타교,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포함함), 이때 "연간"의 기준은 당해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입니다. 따라서 '23년 선정자들의 경우 '23년도 1학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올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12학점 이내로 강의하시면 됩니다.</p>	
29	<p>Q.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BK 박사후 연구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A. 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 퇴직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에서 고용계약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p>	
30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신청하는데, 제출할 수 있는 연구논문의 언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현재 제 연구성과 3편은 KCI 1편, SSCI 1편, SCOPUS 1편이고, 이 중에서</p>

	<p>SOPUS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중국어입니다. 즉, 한국어, 영어, 중국어 논문이 각 1편씩입니다.</p> <p>A.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논문의 언어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 모두 인정합니다.</p>
31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개인 연구(중견연구지원사업)를 진행 중입니다. 총 3년의 연구기간으로 지원받았고, 현재 1년 7개월째 연구를 진행 중이며 2년차 연구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의 연구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유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p> <p>A. 중견연구지원사업이 2024년까지 지원되는 경우 학술A유형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p>
32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관련 질의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유형과 B 유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2. 연구업적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A 유형에서 제출해야 할 5년 내 연구업적 3개에 KCI 논문 두 개, 미국 대학에 제출한 박사 논문으로 구성될 수도 있나요? 3. 학술지는 kci 등재지로만 제한되나요? <p>A. 1. A, B유형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2, 3.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 모두 인정됩니다.</p>
33	<p>Q. 학술연구교수 A유형도 B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 소속으로 신청 가능한가요?</p> <p>A. 학술연구교수 A, B유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을 소속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시 별도의 위탁기관에서 관리합니다.</p>
34	<p>Q. 개인연구자지원사업에도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나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비율이 궁금합니다.</p> <p>A. 지역할당제는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에</p>

50%의 예산을 할당합니다.

35	<p>Q. 2022년도 학술연구교수 B트랙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올해 A트랙에 선정된다면 6월1일 연구개시로 22년도 B트랙과 23년도 A트랙의 연구수행 기간이 약간 겹치는 듯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 과제의 지원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일까요?</p> <p>A. 수행기간이 겹치더라도 연구비에 대한 반납은 없습니다.</p>
36	<p>Q.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선정된 사업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질적연구입니다 양적연구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p> <p>A.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로 지원됩니다. 평가 시 질적연구, 양적연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p>
37	<p>Q.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지원금을 주관하는 기관 지정 시 현재 연결된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이 있으나 향후 소속이 계속될지 불분명할 경우 연구재단 소속으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A.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 기관이 변경 시 재단에 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시면 문제가 없는 한 승인되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p>
38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사업개시 시기가 6월 1일인데, 강의학점의 경우 연간 12학점일 경우, 측정 시점을 언제로 하는가요? (신청시 or 선정시 or 사업개시시점 등) 학기가 6월 중순에 끝나는 경우, 사업 선정후 2학기 강의수로 조정 하면 되나요?</p> <p>A. 선정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입니다.</p>
39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 내 '연구실'에 채용되어도 되는 걸까요?</p> <p>A. 해당 대학에 정식으로 등록된 부설연구소를 말합니다.</p>

40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무기명 평가를 위해 논문 제목 및 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데 연구계획서에서 대표 연구업적을 작성할 때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p>
	<p>A.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내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도 신청자의 정보(성명, 소속, 지도교수명, 논문 및 저서제목,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 등)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논문 및 저서의 제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연구업적의 내용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41	<p>Q. 1. 학술연구교수 A, B 모두 동시 지원 가능한가요? 2. 작년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연구계획서를 제목과 주제는 동일하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올해 2023년 학술연구교수에 재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p>
	<p>A. 1. 학술연구교수 A, B유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은 1과제만 가능합니다. 2. 선정되지 않았던 과제의 연구활동 계획서는 수정/보완하여 제출 가능합니다.</p>
42	<p>Q. 학술연구교수 신청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배치를 위해 신청자가 부설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별도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p>
	<p>A. 해당 연구소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정 이후 원활한 연구소 발령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p>
43	<p>Q. 혹시 2022년 선정된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또는 B유형 연구계획서 예시를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p>
	<p>A. 기 선정된 과제계획서는 해당 연구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사업별 게시판을 통해 연차별로 예비 또는 최종선정 공고 시, 예비선정 또는 최종선정 과제들의 개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44	<p>Q. 올해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연구지원 하나요? A. 학술연구교수 A 및 B유형 지원합니다.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45	<p>Q. 현재 시간강사로 임용된 사람도 학술연구교수 A형과 B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올해 학술연구교수 A형과 B형에 신규과제 수는 얼마나 되나요? A. 학술연구교수 A, B유형은 비전임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A유형은 400과제, B유형은 2,150과제 선정 예정입니다.</p>
46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사업이 경우 선정 후 연구 진행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 등의 사유로 중단될 경우 남은 연구비의 반납 및 관련 의무사항을 수행하면 되지만,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중단 시 제재조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47	<p>Q.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A, B유형 지원시 연구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A. A유형은 5년 내 3편, B유형은 5년 내 1편입니다.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48	<p>Q. 1.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의 경우 여성, 지역가산, 출판 트랙은 사라졌나요? 사업 신청 서류에 선정 과제수 50%를 비수도권 할당 추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에 논문 편수가 있는지, 전일제여야 하는지요? 학술활동 결과물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요? (세부 내용 모두 공고를 기다려야 하나요?) A.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의 출산트랙은 계속 존재합니다. 지역에 대한 50% 할당은 A유형에 존재(선정과제의 50%내외를 지역에서 신청한 과제 선정)하며, 출판트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p>

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49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과제 진행 중에 전임으로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p>
<p>A. 과제 수행 중 취업이 되면 수행 기간 및 어느 기관에 취업 하느냐에 따라 과제 수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50	<p>Q. 학술연구교수의 지원 기간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연구자에 한해 ~ 3년을 추가적으로 부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가요?</p>
<p>A. 과제 신청과 관련하여 출산에 의한 연구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연구자에 대한 경력 산정의 확대 방안입니다. 과제 수행과는 관계없습니다.</p>	
51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B유형 모두 과제 수행 중 시간강사로 강의가 가능한가요? 학기당 시수 제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A. A유형의 경우 선정자를 대학 내 부설연구소에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일 기관 내 중복발령을 제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부설연구소 발령을 위해 기존에 발령되었던 직급은 정리하는 사례가 많으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시간 강사"로서는 강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에 발령된 직급(연구원, 연구교수 등)으로 강의를 계속 하실 수는 있으며, 강의 학점은 연간(당해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 12학점 이내로 제한됩니다. B유형은 A유형과는 달리, 시간강사로서 계속 강의가 가능하며, 별도의 학점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p>	
52	<p>Q. 학술연구교수 A.B형 모두 지방에 50% 배당하는 것인가요?</p>
<p>A. A유형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p>	
53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B유형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1. 모두 시간 강사나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정년 트랙 교수</p>

	<p>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p> <p>2.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시간강사나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정년 트랙 교수가 어떤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3. A나 B 사업 중간에 예를 들면 첫 6개월이 지나고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4. 인문사회 기초연구와 인문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

- A. 1. 학술 A, B 유형의 경우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2.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 시 연구 진행 시기에 따라 남은 연구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하거나, 종료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별 신청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유형별로 다릅니다. A유형은 중단되고 남은 잔액 반납,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B유형은 계속 지원됩니다. 하지만, 연구가 불가능한 기관(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과제가 중단됩니다.
4. 인문사회 기초연구 안에 인문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4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 B 유형의 경우, 공동연구과제 박사급연구원 등으로 4대보험을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 실시 전에 이전 직위(?)에서 물러난다면 신청 및 선정 가능한 것인지요??</p>
----	---

- A. 학술연구교수 A, B 유형의 경우 취업자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시 퇴직하셔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예외 사항이며, 관련해서 각 사업별 신청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5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 B 유형 관련 질문입니다.</p> <p>1. 사업 신청 기간 내에 대학 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섭외하지 못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기관 위탁할 시, 사업에 선정된 후 대학 연구소를 섭외하여 변경 가능한가요?</p> <p>2. 사업에 선정된 후 재단->연구소로 주관기관 변경이 가능</p>
----	--

	<p>하다면 지역은 상관없나요? 다시 말해서, 재단 위탁기관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방대 연구소 등 지역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p> <p>3. 블라인드 평가로 개인 노출을 제한해야 하는데 공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최근 연구실적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논문이 발표된 연도와 학술지명 정도는 기술해도 되나요?</p>
	<p>A. 1.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 시 별도의 위탁기관으로 과제 관리를 위탁합니다. 하지만, 선정 후에라도 주관기관을 섭외하시면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p> <p>2.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습니다.</p> <p>3. 연구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소속, 성명, 지도교수명, 논문(저서)제목, 클릭 시 원문으로 연결되는 URL 등 포함)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문의하신 논문발표 연도와 학술지명은 기재하셔도 됩니다.(참고문헌은 해당사항 없음)</p>
56	<p>Q. 학술연구교수 A유형, B유형 2022년 선정 기준 경쟁률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p>
	<p>A. 2022년 기준으로 A유형은 21%, B유형은 48% 내외입니다. 매년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선정률은 변동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57	<p>Q.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p>
	<p>A. 취업시기 및 취업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58	<p>Q. 학술연구교수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소속이 없는 비전임이며, 모교에서 주관기관으로 협력하기로 한 경우 -> IRIS와 KRI에 소속기관을 해당 주관기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A. 과제 신청 전 주관연구기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p>
59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B유형을 동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B유형(단기)의 주제와 동일하게 장기과제로 발전시켜서 A유형에 지원 가능한가요?</p>

A.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 사업만 선정됩니다.

60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 B유형의 경우 박사 학위 논문이 미국이나 유럽 출판사에서 학술서로 출간이 된다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니까?

A.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1

Q. 전업강사인데, A대학에는 '강의전담교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9학점 강의)'이고, B대학은 '강사(3학점 강의)'입니다. 이 경우 학술연구교수 A와 B유형 중 어디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둘 다 지원 가능한 걸까요?

A. 학술연구교수 A, B의 참여요건에 충족되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 모두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A유형만 지원됩니다.

62

Q. 개인연구에서 A형과 B형, 저술출판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학술연구교수 A, B유형과 저술출판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술연구교수 A, B유형의 경우 동시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63

Q. 학술연구교수 A와 우수학자지원사업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B), 증견연구, 우수학자 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불가합니다.

64

Q. 현재 학술연구교수 A유형 책임연구자가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책임연구자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요?

A. 해당 사업은 개인 및 공동연구군으로 연구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지원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는 가능합니다.(동시 선정 시 공동연구에서는 인건비 수령 불가)

65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1,4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지원비가 늘었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며, 앞으로도 계속 2,00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학술B유형의 경우 19백만원이 연구수당, 1백만원이 간접비입니다. 19백만원의 연구수당을 주관연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6	<p>Q.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B유형 신청자격의 경우 만 64세 이하 석사학위 소지 조건 이외에 연구업적 기준도 충족해야 하나요?</p> <p>A. 최근 5년 내 연구업적이 1편 이상인 자입니다. 자세한 연구업적 산정방식은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67	<p>Q.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전업 강사로서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업강사 확인서, 소속기관 확인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한가요?</p> <p>A. 기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B유형)은 취업자의 신청을 제한했지만, '23년도부터는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될 경우 과제 개시일 전에 건강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업강사로 인해 직장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전업강사 확인서와 소속 기관 확인서 제출 후 과제 수행 가능합니다.</p>
68	<p>Q. 혹시 학술연구교수 B유형 글자포인트 12로 해도 되나요?</p> <p>A. 글자크기는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며, 줄 간 간격은 조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평가 사업으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69	<p>Q.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연구과제 숫자를 볼 때, 2021년 숫자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와 비슷한 확률로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학술연구교수 A유형이 405개 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많이 2021년 때보다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나요?</p> <p>A. B유형의 경우 2022년 1,799과제를 지원했고, 2023년은 2,150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정률은 알 수 없습니다.</p>
70	<p>Q. 인문사회연구교수(B유형) 2022년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2023년 지원이 가능한지요?</p>

A. 지원 가능합니다.

71 Q. 시간강사지원사업은 언제 공고 되나요?

A. 시간강사지원사업은 폐지사업입니다.

관련해서 후속 사업은 학술연구교수 B유형입니다.

72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B트랙) 정부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증인
경우 취업자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학술B유형의 경우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 퇴직하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업강사 또는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 증인 희망 일자리 사업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73 Q. 2021년과 2022년 연구교수 B유형 과제 수행 증인데 2023년
지원 가능한가요?

A.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경우 1년 과제입니다. 매년 신청 수행 가능합니다.

74 Q. 학술연구교수 B유형-박사과정생으로 BK사업을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75 Q. 박사 취득 후 3년 미만이고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지원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76 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연구업적
1편을 산정하나요?

A.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내 연구업적이 1편 이상인 자입니다. 자세한 연구 업적산정 방식은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Q. 학술연구교수 B유형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여 사업개시일
9.1. 이후에 건강보험이 포함되는 4대 보험(개인사업자가 될

	<p>경우) 연구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A.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확인하는 내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취업자로 분류됩니다.</p>
78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경우 국책연구기관(등재지)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학술대회자료집 논문 전문 실림)도 연구업적에 들어갈수 있나요?</p> <p>A. 발표 실적은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79	<p>Q. 시간강사는 학문후속세대 B 유형 개시일부터 못하는 걸까요?</p> <p>A.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2023년부터 미·취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 퇴직하셔야 합니다. 예외 조건으로 전업강사(시간강사)는 선정 이후 전업강사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시면 연구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청요강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80	<p>Q. 소논문 2편 박사후 5년 이내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면 어떤 트랙이 가능한가요? 연구교수B 가능할까요?</p> <p>A. 업적 기준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질문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별 신청 요강(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81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경우, 연구 업적관련 내용 입력은 없는 것이지요?</p> <p>A. KRI상에 사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논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p>
82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할 경우,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p> <p>A. 각 사업의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학술연구교수 B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p>
83	<p>Q. 2023년도 학문후속세대(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신청요강 중에서 신청자격 국·내외 대학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p>

	<p>명시되어 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도 신청가능합니까?</p> <p>A. 가능합니다.</p>
84	<p>Q. 시간강사 지원사업은 없나요?</p> <p>A. 해당 사업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후속 사업으로 학술연구교수 B유형입니다.</p>
85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최근 5개년 내 연구 업적이 1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1편이 공저인 경우도 동일하게 1편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p> <p>A.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와 무관)합니다.</p>
86	<p>Q. 2019년 시간강사 2020, 2021 학술연구교수 B 유형을 했는데 올해에도 B 유형을 할 수 있는지요?</p> <p>A. 신청 가능합니다.</p>
87	<p>Q. 2023년 학술연구교수 B유형 신청자들은 반드시 국내 거주 증명을 해야 하나요?</p> <p>A. 과제 선정 이후 연구비 지급 시 주관연구기관에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p>
88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비수도권 할당제도가 적용 되지 않나요?</p> <p>A. B유형의 경우 지역 할당제는 없습니다.</p>
89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중복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한가요?</p> <p>A.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증입니다. 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p>
90	<p>Q. 저는 박사과정생인데, 학문후속세대 연구장려금과, 학술연구교수 B유형 어느 쪽을 지원해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한지, 둘 다 지원 후 선택 가능한지요?</p> <p>A. 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에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p>

다만,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91	<p>Q. 1.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경우 재작년에 지원하고, 아직 결과물 제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신청이 다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2.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은 결과물 제출이 없는 건지, 학술연구교수 B유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A. 학술연구교수 B유형 신청 가능합니다.</p> <p>다만,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p>
92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이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 B유형 과제 선정 후 해외 대학에 임용되어 나가게 되는 경우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p>
	<p>A. 신진사업의 경우 해외 대학으로 임용되어 나가는 경우 연구비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 이직이기 때문에 연구 중단됩니다. 학술B의 경우 과제 수행 기간 중에는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p>
93	<p>Q. 저술출판지원사업과 학술연구교수 B유형 2개를 지원해도 가능한가요 ?</p>
	<p>A. 저술출판과 학술B유형의 경우 사업군이 다른 사업으로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p>
94	<p>Q.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경우, 강사 퇴직자와 현직강사의 평가와 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요?</p>
	<p>A. 2022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강사경력자'와 '일반' 의 2개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올해 2023년부터는 트랙을 일원화하여 지원하게 되며, 해당 사업은 지원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p>
95	<p>Q.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발표평가가 있는지요?</p>
	<p>A.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전문가 온라인 개별평가로만 진행됩니다. 별도의 발표평가는 없습니다.</p>

96	<p>Q.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blind 평가를 합니까?</p>
<p>A.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은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p>	
97	<p>Q.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A유형의 경우 대표 업적에 기존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이었음을 밝히는 것도 블라인드 평가에 저촉되는 것인가요?</p>
<p>A.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는 연구활동 계획서 내용 및 파일명, 대표연구업적 정보 등에 연구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소속, 성명, 지도교수명, 논문(저서) 제목 등)도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기존 연구에 재단 지원 사업임을 밝히는 경우 상기에서 명시한 내용을 유념하여 과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 개인연구자지원사업

1	<p>Q. 신진 연구자 지원자 요건 중 조교수 이상 임용이 필수 조건인지 아니면 학위 취득 10년 이내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조건인가요?</p>
<p>A. OR 조건입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p>	
2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개인연구 부분도 지방대 할당이 있나요?</p>
<p>A. 신진연구의 경우 지방 할당은 없습니다.</p>	
3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 당시에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데, 연구 중 소속이 바뀌게 되어도 가능할까요? (예: 대학 -> 연구원 또는 타 대학 이동)</p>
<p>A.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비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p>	
4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소속 대학 산단에서 근무하며, 대학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비전임일 경우, 연구사업에 참여해도 인건비는 따로 받지 못하고, 연구 관련 비용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p>
<p>A. 신청요강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자의 경우 인건비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p>	
5	<p>Q. 신진연구 1년형(21년 선정), 학술연구교수 B유형(22년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연구 종료기간 전인데 이번에 신진연구 1년형 가능한가요? 2책 3공 위반인가요?</p>
<p>A. 2023년 신진연구의 경우 6월 1일 개시됩니다. 때문에 21년 선정 신진의 경우 종료되었고, 학술B의 경우 22년 선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p>	
6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한번 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종료 예정이지만 조교수 임용 5년 이내이면 다시 신진연구자로 지원해야 할까요?</p>
<p>A. 해당 자격요건에 포함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p>	

7	<p>Q. 개인연구자(신진연구자)의 경우, 연구업적 3편 이상이라고 하면 단독 3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p>
	<p>A.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내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인 자입니다. 공동저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구업적 산정방식은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8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일반유형과 창의도전/소외보호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만 가능한지요?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각각 선정률이 궁금합니다.)</p>
	<p>A.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4가지 트랙이 있으며, 1가지 트랙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률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p>
9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일 경우에 회사 소속된 자도 지원 가능한가요?</p>
	<p>A.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부분의 연구자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자의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p>
10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책임연구자가 해외 소속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연구재단 주관 기관으로 신청 가능할까요?</p>
	<p>A. 해외 소속의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 불가능합니다.</p>
11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일반은 국내 박사후 과정을 밟지 않아도 가능한가요?</p>
	<p>A.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일반은 일반적인 실적 및 경력을 충족하는 연구자가 모두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2	<p>Q. 개인연구지원 신진연구자의 일반유형 선정에도 지방에 대한 선정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A. 별도의 지방 배정은 없습니다.</p>
13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요건 중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p>

	<p>연구자는 꼭 전임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비전임 강사도 가능하나요? 학술연구교수 A나 B유형과 차이가 있나요?</p>
	<p>A. 해당 조건은 OR 조건입니다. 조교수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10년 이내입니다. 학술연구교수 A유형 사업은 장기지원(최대 5년), B유형은 단기지원 (최대 1년)을 하고 있습니다.</p>
<p>14</p>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창의도전, 소외보호 범주에 속한 기 선정자 목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p>
	<p>A. 기 선정된 과제 정보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략한 요약문을 확인하시려면 KRM(기초학문자료센터) 및 재단 홈페이지-알림공간-재단과제지원현황-선정과제현황의 학문분야를 클릭하시어 확인 가능합니다.</p>
<p>15</p>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보통 신규과제 신청자 수 대비 선정 과제의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p>
	<p>A. 2022년 선정률은 17% 내외입니다. 다만,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선정률이 달라집니다.</p>
<p>16</p>	<p>Q.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지요?</p>
	<p>A. 일반공동연구에서 인건비를 수령 받지 않고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 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p>
<p>17</p>	<p>Q. 1. 산학협력단 산하 대학교 소속 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2. 산학협력단 산하 대학교 소속 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신청했을 경우, 이것이 대학 산단에게 통보될 것 같은데, 산단 소속 연구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제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굳이 알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p>
	<p>A. 1.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2. 과제 신청 이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승인을 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협의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p>Q. 공동연구 지원 시 신진연구지원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같은 사업군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p>
	<p>A.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시 신진연구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시 신진연구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p>
<p>18</p>	<p>Q. 신진연구자 연구분야 기타인문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 선정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사 관련으로 정확히 현재 연구분야 분류 방식으로 넣기 애매한 학제간 연구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p>
	<p>A. 선정평가는 연구자께서 선택하신 심사요청분야(최대 3개) 및 연구계획서,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패널을 분류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책임전문위원이 패널구성을 확정 한 후 적합한 심사자를 섭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p>
<p>19</p>	<p>Q.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는 조교수와 비전임 교원의 과제 평가에 차등이 있는지요?</p>
	<p>A.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조교수와 비전임교원에 대한 차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요강에 명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20</p>	<p>Q.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이면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미만 연구자이면 신진연구자인가요 중견연구자인가요?</p>
	<p>A. OR 조건입니다. 신진 및 중견 두 가지 사업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p>
<p>21</p>	<p>Q. 신진 또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 시 해외경력은 카운트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해외에서 10년간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한 후 작년에 귀국, 국내에서</p>

	<p>처음 지원할 경우, 신진연구자로 응모해야 하나요?</p> <p>A. 해외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p>
22	<p>Q.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자입니다. 조교수 이상 직위에 포함될까요?</p> <p>A. 신진 및 중견연구에서 조교수 기준 5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출연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23	<p>Q. 소속이 없는 개인연구자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나요?</p> <p>A.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소속기관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p>
24	<p>Q.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트랙2(신진양성)의 경우 "기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수행 당시 연구 주제와 유사·동일한 주제 지원"인데, 주제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 혹은 동일해야 하나요?</p> <p>A. 관련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연구책임자분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관련 내용은 신청요강의 신청서 양식 및 평가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25	<p>Q.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서 장기소액은 매년 천만원씩 10년간 지원되는 것인가요?</p> <p>A. 5+5의 형태로 10년간 지원되며, 매년 천만원씩 지원됩니다.</p>
26	<p>Q. 박사후 연구원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p> <p>A. 중견연구의 경우 개인연구입니다. 때문에 공동연구원으로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으로는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후 참여 가능합니다.</p>
27	<p>Q.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트랙2(신진양성) 지원자격 질문입니다. 2020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4월이 연구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이직으로 인한 기관 변경의 사유로 각각 6개월씩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2023년 4월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p> <p>A. 신진양성 트랙의 경우 기 수행 연구과제(신진)의 최종 종료일이</p>

2020.1.1.~2022.12.31.인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되어있으며, 단,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기간을 연장한 과제는 당초 연구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 4월에 종료되는 과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 | |
|----|---|
| 28 | <p>Q.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을 소속기관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할까요?</p> <p>A. 불가능합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B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 증양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A유형과 B유형 외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p> |
| 29 | <p>Q.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감소한 배경이 있을까요?</p> <p>A. 예산 심의 시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계속과제 수의 증가로 인하여 신규과제의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p> |
| 30 | <p>Q. 증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보면 학술연구교수 A, B유형과 달리 연령제한 내용이 없는데,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는 건가요?</p> <p>A.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p> |
| 31 | <p>Q. 증견연구자지원사업 3차년 사업 신청 시, 만약 2차년에 연구년을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년도 연구를 한 해 미루는 것이 가능할까요?</p> <p>A. 연구년을 가게 되어도 문제없이 과제만 수행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됩니다.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과제 기간을 미루거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p> |
| 32 | <p>Q. 2013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강사로 재직 중인 연구자가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실적이 없는데 학위취득 10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증견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요?</p> <p>A.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33	<p>Q. 1. 우수학자와 증견연구는 1개 과제만 수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행 우선순위: ①우수학자 → ②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 ③신진 또는 증견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p> <p>2. 한 사람이 우수학자와 증견연구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두 계획서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유사도가 허용되는지요?</p>
----	---

A. 우수학자지원사업과 증견연구자지원사업은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이 불가합니다.
 연구계획서의 경우 우수학자는 5년, 증견은 최대 3년, 그리고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때문에 동일한 계획서는 불가능하며, 연구주제나 내용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34	<p>Q. 우수학자연구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p> <p>1. 정년퇴임한 교수도 연구에 참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 세까지 가능한지요?</p> <p>2. 연구보조원은 몇 세까지 가능한지요? 학생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교수로 명퇴 또는 퇴임한 사람도 활용 가능한지요?</p> <p>3. 우수학자 연구에서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2500만원은 모두 인건비로 책정해야 하는지요? - 학생만 대상인지요?</p>
----	---

A. 1. 우수학자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퇴임하신 연구자라도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대학 내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직급은 해당 학과의 명예교수, 대학 내 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모두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해당 대학과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보조원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연구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생 또는 수료생입니다.

3. 예, 학생연구자만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35	<p>Q. 우수학자연구지원은 비전임교원(강사 등)도 지원가능합니까? 가능할 경우 학생인건비를 모두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p>
----	---

A. 우수학자지원사업 업적등이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인건비의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36 Q. 우수학자지원사업과 일반공동연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우수학자지원사업과 공동연구지원사업에 동시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 명저번역지원사업

1	<p>Q. 명저번역지원사업에서 '명저'의 범위와 개념을 알려 주십시오.</p> <p>A.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 유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서형: 기 지정도서 및 신규 추천도서 중 분야별 지정도서추천위원회 적합성 검토를 거쳐(Top-down) 각 학문 분야의 사상적 줄기가 되는 주요 명저를 선정 - 자유주제형: 해외이론 및 학문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도서 등, 번역이 필요한 도서를 신청(Bottom-up) <p>2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지정도서형의 경우 공고 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
2	<p>Q. 명저번역지원사업 대상으로 한문고전도 포함되나요?</p> <p>A. 한문고전의 의미가 국학고전의 의미를 가지신다면 지원 불가능합니다.</p>
3	<p>Q. 명저번역지원사업의 번역출판물 실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교재를 번역한 것도 실적에 포함될까요?</p> <p>A. 명저번역의 신청 기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독 번역 출판물 1종 이상인 연구자 또는 ② 4인 이하의 공동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자로서, 2018.1.1.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아래 업적기준의 실적 1편 이상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p>해외교재를 번역한 것에 대한 것도 실적에 포함됩니다.</p>
4	<p>Q. 명저번역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현대 소설 중 문학상을 탄 작품의 외국어 번역출판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저술출판은 교과서도 해당되나요? 3. 학술연구교수는 한국 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p>A. 1. 명저번역지원사업은 외국 명저에 대한 번역지원사업 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저술출판지원사업은 편람사전편찬교재개발번역·전람회·연주회·논문모음집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학술연구교수는 국내 국적자만 지원합니다.

5 Q. 명저번역사업의 경우 지정과 자유과제를 합쳐 38과제가 신규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미 지정과제가 41과제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유과제 신청 자체가 지정과제에 비해 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지요?

A. 지정주제가 41개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41개의 지정주제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두 접수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6 Q. 1. 명저번역의 경우 출판비 지원 증액이 있던데, 저술출판의 경우 출판비 지원 증액은 없습니까?
2.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 중간에 소속기관 변경은 가능합니까?

A. 1. 명저번역지원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별도의 출판사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판지원비는 해당 출판사로 지원되는 비용이며, 연구책임자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술출판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지정 출판사는 없습니다.
2. 선정 이후 소속기관 변경 시 연구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7 Q. 명저번역 사업 신청 시 본인의 전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종교학 석사이고 한국어교육학 박사과정생인데 이미 번역된 저작은 종교학 분야인데, 이번 신청에는 언어학 저술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본인의 전공과는 무관합니다. 지원분야가 인문사회분야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8 Q. 학술연구교수 A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확산군(명저번역, 저술출판)에 연구 책임자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A. 저술출판 또는 명저번역사업에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 저술출판지원사업

1	<p>Q. 저술출판지원사업의 경우도 최근 5년 이내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연구자의 경우 연구업적 산출기간을 최근 5년에서 8년으로 3년 추가 부여하는지요?</p>
<p>A. 저술출판지원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2	<p>Q. 저술출판지원사업에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A. 저술출판지원사업은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정산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내역만 증빙하면 됩니다.</p>	
3	<p>Q. 저술출판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술출판지원사업의 경우에 책을 집필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개인 전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한국 정치사에 유명한 백봉 라용균 선생님의 일대기를 집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p>
<p>A. 저술출판지원사업의 경우 편람·사전·편찬·교재개발·번역·전람회·연주회·논문모음집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4	<p>Q. 개인연구자는 저술출판지원사업에 해당이 안되나요?</p>
<p>A. 저술출판지원사업 개인단위의 지원사업입니다.</p>	
5	<p>Q. 저술출판지원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체육 분야이고, 학술서로 진행할 경우 최종 페이지가 300p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p>
<p>A. 저술출판지원사업의 경우 계획서 내에 저술완성 분량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함(출간완료도서 기준 300페이지 이상 이어야 함. 도서규격은 제한 없음)</p>	
6	<p>Q. 저술출판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과물을 출판할 때 기존출판물을 30%이상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출판물에 잡지나 신문 또는 일반학술지(등재나 등재후보지가 아닌)곳에 실은 논문도 30%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십시오.</p>

- A. 기 발표된 내용(논문 또는 저서)이 30% 이상 포함된 저술은 출판유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원고포함) 평가 시 평가위원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Q. 저술출판지원사업 신청 조건이 대학연구기관 소속된 연구자로 되어있는데요. 비전임 교원도 가능할까요?

A. 저술출판지원사업은 신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구업적이 사업에 중복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8

Q.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 저술출판지원사업 신규 신청이 제한되는지요?

A. 저술 또는 명저사업에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 공동연구지원사업

1	<p>Q. 공동연구나 융합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들의 지역이 모두 상이한 경우(서울경기, 충남, 경남 등) 권역 구분은 연구책임자의 대학위치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p>
<p>A. 권역 구분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으로 구분됩니다.</p>	
2	<p>Q. 공동연구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p>
<p>A. 공동연구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가 2인 이상 모여서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3	<p>Q. 이번 공동연구지원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요강 내용 중에 공동연구사업에서 일반연구와 해외연구가 있는데 선정 비율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합쳐져서 나오는데 일반과 해외연구의 선정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A. 해당 사업의 경우 일반과 해외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 과제수를 고려하여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p>	
4	<p>Q. 공동연구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연령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대학에는 정년이 만 65세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도 이와 동일한지요? 그리고 사업 진행 중 만 65세가 넘는 연구원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사항들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p>
<p>A. 전공평가는 연구자의 연령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됩니다.</p>	
5	<p>Q.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 시 공동연구자에 해외대학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외연구'로만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제에 따라서 '일반공동'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p>
<p>A. 일반공동유형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대학 교수는</p>	

우리 사업에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바, 5년간 연구업적 5편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해외유형은 해외공동연구원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하시고자 하는 주제나 연구기간, 연구비 등을 고려하시어 일반공동유형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Q. 공동연구 안의 일반공동과 해외공동연구를 진행 할 때 한명의 연구자가 2개 모두 공동연구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A. 일반유형과 해외유형은 동일한 사업(공동연구사업)입니다. 때문에 두 사업에 모두 공동연구원으로 등록 불가능합니다.

7 Q. 현재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 사업신청 가능하나요?

A. 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수행자는 공동연구의 책임자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공동연구원으로는 가능합니다.

8 Q. 공동연구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1. 정년퇴임한 교수도 연구에 참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 세까지 가능한지요?
2. 연구보조원은 몇 세까지 가능한지요? 학생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교수로 명퇴 또는 퇴임한 사람도 활용 가능한지요?

A. 1. 연구 참여 가능합니다.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2. 퇴직한 교수급 인력은 연구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생입니다.

9 Q. 일반공동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비전임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의 기준은 업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임/전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Q. 공동연구지원사업 3년차 연구를 지원하고, 2년차에 공동연구원을 교체 예정입니다. 그럼 신청할 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에 2년차에 새로 들어올 공동연구원까지 서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1년차 공동연구원만 서명하고, 이후엔 새로 계약할 때마다 서명하면 됩니까?

A. 과제 신청 시 참여하는 공동연구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연구계획변경을 통해 공동연구원의 변경 시 변경된 연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Q. 일반공동연구의 경우 학술연구교수와 달리, 연구자의 역량 기술하는 부분에 본인이 드러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블라인드 평가 여부

A. 공동연구지원사업은 평가지표 중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오픈(Open) 평가 대상 사업으로,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진을 알아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무관합니다. 현재 학술지원사업 중 무기명(Blind) 평가 대상 사업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B유형 및 신진 연구자지원사업이고, 그 외에 모든 사업은 오픈(Open) 평가 대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2 Q. 공동연구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2인 이상의 연구자 '각각'이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5편 있어야 하는 것인지, 2인 이상의 연구자의 업적이 합해서 3-5편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연구업적이라 할 때 주저자로 쓴 업적만 포함되는지 기타저자로 참여한 연구도 업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연구의 경우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별적으로 업적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동저자의 논문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신청 요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 Q. 일반공동 및 융합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모두 연구업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A.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의 경우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별적으로 업적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Q. 일반공동연구 중에서 박사급연구원의 인건비 책정 기준 등에

	<p>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p> <p>A. 사업에서 정하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연구팀에서 연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p>
15	<p>Q. 공동연구지원사업 공고일과 마감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공지사항에 있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요.</p> <p>A. 연구자 접수 : 2023.03.09.(목) 14:00 ~ 03.15.(수) 18:00 주관연구기관승인: 2023.03.09.(목) 14:00 ~ 03.17.(금) 18:00</p>
16	<p>Q. 1. 질문자는 2021년 선정 학술연구교수(A유형)를 수행 중입니다. 질문자는 2023년 공동연구(국내연구)의 일원인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자가 2023년 공동연구(국내연구)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요? 2. 2023년 공동연구(국내연구)에 지원할 공동연구자가 재직중인 대학교를 떠나(퇴직은 아님!) 1년간 해외체류 or 6개월간 국내체류를 하여도 연구비 수령에는 변동이 없는지요?</p> <p>A. 1. 공동연구사업의 공동연구원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연구년 등에 의한 해외 또는 국내 체류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p>
17	<p>Q. 현재 인문사회연구소에 전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혹시 공동연구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이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형)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나요?</p> <p>A. 공동연구사업의 일반공동연구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이후 퇴직하셔야 하는데, 현재 전임연구원으로 계시면 아마도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되어있을 것 같은데 신청요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8	<p>Q. 일반공동연구 및 융합연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원대상이 2명인 경우, 지원대상의 연구업적이 2명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건지, 연구책임자만 충족되면 지원 가능한지요?</p> <p>A.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업적 충족기준은 개별 기준입니다.</p>

신청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p>Q. 일반공동연구나 융합연구의 인원제한이 있을까요?</p>
	<p>A. 공동연구원의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는 2인 이상, 융합연구는 5인 이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p>
20	<p>Q.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책임자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대학의 전임연구자로 제한되나요?</p>
	<p>A.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연구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 5편 이상 보유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을 확인하세요.</p>
21	<p>Q. 명예교수는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나요?</p>
	<p>A. 각 사업별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p>
22	<p>Q. 일반공동연구사업이나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중 현직 교사지만 휴직한 대학원생도 인건비/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p>
	<p>A. 휴직한 교사의 경우 인건비 지급은 안됩니다. 다만, 연구수당의 지급은 가능합니다.</p>
23	<p>Q. 공동연구지원사업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대학병원에 소속된 진료조교수도 가능할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 아니라 대학병원 소속도 가능한지 2. 이공계 전공자가 공동연구원이 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3. 공동연구원이 연구신청 당시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A. 1. 병원 소속의 연구자도 사업 요건에 충족된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2. 이공계 전공자 참여 가능합니다. 3.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연구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미흡한 경우 변경하셔야 합니다.</p>
24	<p>Q. 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일반공동연구와 해외공동연구의 선정</p>

	<p>비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까. 경쟁률은 보통 어떤지 궁금합니다.</p>
	<p>A. 공동연구지원사업에는 일반공동과 해외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선정률은 일반공동 7%, 해외유형 19%였으나, 신청과제 수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p>
<p>25</p>	<p>Q. 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B유형)로 신청 및 선정 후 양자 모두 수행 가능한지요?</p>
	<p>A. 공동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학술연구교수 A, B의 참여요건에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 모두 선정 시 우선 순위에 따라 A유형만 지원됩니다.</p>
<p>26</p>	<p>Q. 공동연구(해외연구)의 경우 융합도 가능할까요? (연구분야 타 전공과 융합)</p>
	<p>A. 해외연구에서 융합연구로 신청 가능합니다.</p>

- 융합연구지원사업

1	<p>Q. 융합연구지원사업이 별도 융합연구로 개편되면서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졌나요?</p> <p>A. 융합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입니다. 개인이 신청 불가능합니다.</p>
2	<p>Q. 융합연구를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일반공동연구(해외연구)를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p> <p>A. 융합연구의 책임자, 공동(해외)연구의 참여연구원 가능합니다.</p>
3	<p>Q. 개인/공동연구 융합연구 지원의 경우, 연구자가 미국 대학의 information science 전공의 소속인 경우(Department of Information Science 혹은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이공계 분야라고 간주해도 되나요?</p> <p>A.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경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구분은 KRI에 입력된 전공(연구)분야를 기준으로 합니다.</p>
4	<p>Q. 융합연구지원사업에서 지원조건이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인데, 구성원 모두가 5편 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연구자만 해당되나요?</p> <p>A.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청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인문학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사업

1	<p>Q. 2023년 학술지 공고는 언제인가요?</p> <p>A. 학술지 지원사업 공고는 6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p>
2	<p>Q. 미등록 학술지도 사업에 지원해도 되는지요?</p> <p>A. 미등록 학술지의 경우, 학술대회지원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학술지지원사업 중 신생소외분야 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때 해당 학술지는 최근 3년(2020~2022) 연 1회 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p>
3	<p>Q. 인문학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기관과의 MOU 체결은 필수인가요?</p> <p>A. 주관연구기관(대학)과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MOU체결이 필수입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과 지역기관(지역 내 박물관, 도서관 등)과의 MOU 체결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p>
4	<p>Q. 1. 국제학술대회I의 신청할 때 계획서 상에서도 전문가 해외학자 초빙의 경우 초빙 학자의 항공권 예약내역서를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업에 선정이 되면 항공권 지원이 될 것이라 계획하여 항공권을 학회에서 구매하게 되어 제공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구입한 항공권을 지원 못받게 되어 학회 자체 경비로 10분의 해외 학자분 항공비를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해외학자분의 항공권을 미리 다 구매한 후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2. 신청하는 학회의 실적에 대한 사항은 첨부 문서에 각각의 칸에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 연도에 실시했던 학술대회 및 논문집을 모두 다같이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p> <p>A. 1. 계획서에는 초빙 학자의 항공권 예약내역서를 미리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p>

2. 신청자께서는 신청요강 붙임 계획서 양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5	<p>Q. 인문도시사업 가이드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p>
	<p>A. 현재 가이드북은 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은 건전한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조기 정착 등을 유도하고자 2023년에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목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인문학대증화 사업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p>
6	<p>Q.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등재학술지 발행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 등재후보지 발행 단체가 신청 가능한지요?</p>
	<p>A. 학술단체지원사업 세부 유형별로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학술대회지원사업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학술지지원사업 중 국내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가 신생소외분야학술지는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최근 3년 학술지 발행실적이 있는 미등재학술지가 신청 가능합니다.</p>
7	<p>Q. 학술대회지원사업 - 국제학술대회1의 제안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외국 학자 분 10분에 대한 초빙과 관련한 학회의 공문을 발송하여 초빙하고 이에 대한 참석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과정 부분, 즉 이메일로 주고 받은 사항들도 계획서 상에서 10분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초빙과 관련한 응답사항에 대한 사항들은 '결과보고서'에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p>
	<p>A.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해당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8	<p>Q. 학술대회지원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예전의 NRF International Network Program이 이걸로 바뀌었나요? 국제학술대회 개최 관련 기금에 신청하고자 해서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p>
	<p>A. 말씀하신 사업과 학술대회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문의 결과, 해당 사업은 현재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 차이점 파악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 국제 교류팀(02-3460-5684)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p>

9

Q. 학술대회지원사업의 2023년 신규과제 공모는 언제 시작하실 예정인지요?

A.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지난 2월 15일 신규과제 신청요강을 공고하였습니다.

10

Q. 지역기관을 연계하여 인문학대증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본 사업은 주관연구기관(대학 및 부설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1항)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추가로 협력기관(교육청, 평생학습센터, 협동조합, 지역인문학센터 등)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